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57393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8구합5294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0. 16.

판 결 선 고 2018.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13.[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redacted] [redacted]구 B 외 7필지 C아파트 제7층 제707호에 관한 취득세 8,250,000원, 지

1) 항소장에는 '2017. 9.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4호증의 기재에 따라 정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방교육세 82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나. 같은 아파트 제12층 제1203호에 관한 취득세 9,450,000원, 지방교육세 94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